

MVNO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서는 아이즈모바일 홈페이지(www.eyes.co.kr) 이용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1800-6100)를 통해 상세한 이용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성립

- ① 고객은 본인 신분증 등 약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용계약서(정본)를 작성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계약서와 구비서류의 이미지(사본)을 보관하며, 정본 또는 사본(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 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 ③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당사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당사가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이 날인된 본인 위임장, 신분증 등 약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약정보조금

-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이라고 합니다)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고 합니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방식 등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계약에 따르며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 가.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 나.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다.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라.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 복제 단말기인 경우

3. 결합판매

- ①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해당 개별 약관[별표] 요금표에 의합니다.
-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묶어서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이하 '결합된 서비스'라고 합니다)은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⑦ 제6항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요금의 감면

- ① 이용자는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한 통화단절의 경우 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의 이용정지로 해지한 경우 등에는 요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사용요금, 수수료, 실비, 국제자동로밍 수수료,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 ③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 및 국제 통화료는 통화 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5. 계약의 변경

- ① 고객은 서비스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업무에 따라 전화, 온라인신청 또는 본사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번호, 단말기, 유심	본인신청 시: 온라인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번호와 변경 후 성명이 기재된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제출 대리인신청 시: (본사방문) 본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개명, 요금제, 납부방법, 부가서비스, 주소	본인신청 시: 전화, 온라인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번호와 변경 후 성명이 기재된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제출 대리인신청 시: (본사방문) 본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명의변경	본인신청 시: 온라인신청(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번호와 변경 후 성명이 기재된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제출

- ② 주소변경,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등의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변경 제한) 회사는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제외하고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단말기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된 경우, 개별 약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잘못)로 과오납(실제 청구되어야 할 요금보다 많이 청구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7. 이용정지

이용정지란,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등 고객의 각종 위반행위 시 회사가 취하는 조치

가. 즉시 이용정지가 가능한 경우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 시

※ 제30조: 누구든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파법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 명의(이름),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허락받지 않고) 도용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발생하게 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게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 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경우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광고성 메일 또는 음성을 수신 받은 사람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시 전송한 경우

(9)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고객이 2회 이상 요금(5만원 이상은 1회)을 연체한 경우

(12) 기타 이용 약관에서 정한 경우

(13)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사전 통보 후 이용 정지하는 경우

(1)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5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 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정지: 일정기간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고객의 신청에 의한 조치로,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은 SKT, KT, LGU+알뜰폰의 경우 1회 90일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기본료가 과금됩니다.

8. 손해배상

-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전시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고객과실, 제휴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등을 사유로 입증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9. 통화내역 열람 및 교부

- ① 회사는 고객 본인의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하며,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 ② 본인인증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본인확인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통화내역	(개인)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 불가	• 본인이 본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 • 법인은 가입신청시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내방,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부 등) 제출

10. 해지

-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SKT망은 해지시까지 사용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KT, LGU+망은 다음달에 청구됩니다.
- ③ 해지 예정으로 정지를 요청하시면, 7일 동안 별도 과금되지 않습니다. 7일이내에 해지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상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구비서류)

- 개인

구분	내용
----	----

개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

구분	대표자신청시	대리인신청시
방문신청시	사업자등록증사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전원)	1. 법인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2.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3. 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4.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 대리인일 경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과의 이용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 선불 요금제 잔액 소진 후, 30일 이내에 요금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나.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 화상, 포토메일, MMS 등으로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때

마.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 기타 이용약관이 정하는 경우

⑤ 회사는 직권해지 전까지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고객은 직권해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 위약금 부과(위약금 산정방식 등)

-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산정식은 제1호 ~ 제6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

$$\text{위약금} = \text{약정금액} \times \{(\text{약정기간} - \text{약정 후 사용기간}) / \text{약정기간(일)}\}$$

나.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

$$\text{단말 잔여 할부원금} = \text{할부원금} \times (\text{할부기간(월)} - \text{납부기간(월)}) / \text{할부기간(월)}$$

다. 약정 청구 금액은 가입월부터 약정 개월 수만큼 매월 단말기 할부금액(단말할부 원금 / 할부 기간 (월))과 약정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단, 약정기간과 단말 할부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요금할인은 가입월과 약정 종료월에는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단, 요금제변경은 월1회가 가능하며, 변경 후 1개월 이내 재 변경 불가합니다.)

마. 약정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내에서 결정됩니다.

바.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위약금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

가.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으로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나.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다.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라.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 없음

마.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 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12. 번호이동

- ① 번호이동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해지 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다.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라. 사업자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로 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 ③ 번호이동 철회 및 요금정산

가.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합니다.
라.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가입자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 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 회복합니다.

13. 불법스팸방지

-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 또는 1일 200건을 월 10회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⑥ 월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